

열악한 작업환경... 목숨 위협받는 노동자

2인 1조 위반·보호설비 미비...광주·전남 사망사고 잇따라 김용균법 제정 불구 대책 마련 미흡...노동환경 개선 목소리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태안 화재발 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열악한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합법적 사화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위험하고 불안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2020명으로, 전년도(2142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7년(1957명)에 비해 늘어났다. 35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도 매년 100명 이상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지역 작업현장 내 목숨을 잃은 노동자 현황도 올해 4월까지 13명에 이른다. 최근 작업장에서 숨진 고(故) 김재순씨의 경우 2인 1조로 근무하는 안전구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해당 회사는 당시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실한 안전 규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해 지난 3월, 순천에서도 설비 기계에 끼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광주시 북구에서는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나주에서도 지게차를 이용해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 숨졌고 2월에는 광양에서 부두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철골 빔에 맞아 사망했다.

1월에도 광주시 서구 금호동 원룸 건물에서 에어컨 설비를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 환풍기 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30)가 홀로 작업하다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올해 들어 매일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작업 현장의 안전 지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비롯된 사고다.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 내 산재사망사고와 관련, 노동조합의 부재, 노동청의 무심경향 등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가 직접 안전 보장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조치 확립 등을 주장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노동청이 상시·지속적인 관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제공>

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이전 불투명하고 공사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역 창고·공장 건축공사장 1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불과 5일(5월 7~14일)에 걸친 점검에서 48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추락하거나 낙하물에 부상을 입을 우려가 큰 경우가 16건에 달했고 갑작스럽게 노출된 경우도 5건이나 발견됐다. 정부가 지난 2016년 5월 28일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 법'을 시행했음에도 현장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올 1월부터 시행중인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

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김용균법 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더 나아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산업·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관리 감독을 나가는 구조에서는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벌금이 2000만원에 불과한 만큼 기업의 최고 책임자 및 법인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썼다면? 도박자금 등 무단 인출 사용 '횡령죄'

범인 "피해금 반환했어야"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30대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죄에 해당할까.

A(36)씨는 지난 2018년 11월, 모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출금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불려줬다.

해당 조직원은 같은해 12월 비슷한 수법으로 거짓말을 해 A씨 외 또 다른 B씨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B씨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먼저 사용했다.

조직원은 같은해 12월 11일 "명의 도용을 당해 카드와 통장이 개설됐다. 돈을 보호받기 위해 안전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C씨로부터 1600만원을 B씨 계좌로 송금받았다.

조직원은 또 같은 날, 피해자 D씨에게도 "개인정보 유출로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보내라"며 꼬여 1200만원을 B씨 계좌로 전달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 입금됐다. A씨 계좌로 2800만원을 이체하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통장으로 2800만

원을 들어오자 다른 계좌로 2795만원을 이체했다가 10여분 만에 또 다른 은행 계좌로 1630만원을 옮겨놓는 방법으로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쓰는가 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생활비로 빼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A씨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범죄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며 "돈을 챙길 뜻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1000만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로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돼 횡령죄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은행 통장으로 2800만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레저용 모터보트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 중국인 1명 목포서 검거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남성 한 명이 목포에서 붙잡혔다.

27일 태안해양경찰에 따르면 밀입국 용의자 6명 가운데 한 명인 중국인 남성 A(43)씨가 전날 오후 7시 50분께 목포시 상동 한 상가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일행 5명과 함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 21일 태안에 도착했다. 이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

해경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이들이 탄 차량이 목포로 향한 것을 확인하고 목포 일대를 탐문해 A씨를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머지 밀입국자 5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들의 밀입국 목적과 경로, 국내 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생아 이렇게 키우세요"

광주 북구청 저출산아동정책팀과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광주 빛고을여성 병원 로비에서 임산부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속싸개 싸는법 교육 등 출산장려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늘어나는 서해 고래... 불법포획 특별단속

목포해경 7월 24일까지 두달간

서해에서도 고래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도 고래 불법포획 및 가공·유통,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목포해경은 오는 7월 24일까지 2달 간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동해 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밍크고래·참돌고래 등의 고래 출몰이 잇따르면서다.

당장, 지난해에만 여수해상에서 밍크고래 3마리가 잡혔다. 2018년에는 전남지역 바다에서 고래 57마리(밍크고래 5·상괘이 50마리 등)가 그물에 걸렸다. 2017년에도 44마리(밍크고래 10·상괘이 33·범고래 1마리 등)가 붙잡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김현우 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고래류 연구 현황 및 흔적 실태'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밍크고래(몸길이 평균 7m내외)는 국내 서해안에 1000마리, 동해안에 600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해안 밍크고래는 번식과 먹이활동을 위해 매년 4~6월 동해안, 오후츠크해 등으로 이동하면서 어장이 풍부한 여수 앞바다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바닷물은 상승으로 돌고래의 주요 먹이감인 멸치, 오징어 어장이 서해에 형성되는 점도 돌고래 출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잦은 고래 출몰로 서해로 옮겨오는 불법 포획선도 늘어날 것에 대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취역지역 등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항공기까지 활용해 고래포획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포획선의 경우 선장과 포수(작살잡이) 2~3명, 해체기술자 등으로 팀을 꾸려 고래를 포획한 뒤 바다에서 즉시 해체해 비밀 어항 등에 숨겨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다. 해경 설명이다.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